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2
----------	------

발의년월일 : 2007. 3. .
발 의 자 : 문인수 외 인

개정이유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 업무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 경기도의 심의건수 폭증으로 심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설계적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개정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제9조제3항 신설, 제10조 개정)
-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을 위한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제22조 개정 및 제23조 신설)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교통부 훈령 제613호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기타 참고사항

- 건설교통부 훈령 제613호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 타시군 조례 참조사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7조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제3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5항의”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의”로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8조에”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8조에”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가 제7조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에는 당해 안전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중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 이상과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평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입찰서에”를 “제7조제4호의 사항에”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일괄입찰·대안입찰 설계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는 건설교통부 건설기술 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을 참고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안산시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것 중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자문요청 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생략) <u><신 설></u></p>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제7조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의소관부서의 장이 된다.</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1 ~ 2(생략) 3. <u>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u> <u>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2005.1.5></u> 4. <u>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u> <u>제79조제2항 · 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u>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한 집행기본계획서</u> 심의<개정2005.1.5></u> 5 ~ 7(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1 ~ 2(현행과 같음) 3. <u>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u> 제74조제5항의 ----- ----- ----- 4. <u>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u> 제95조제2항·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의 ----- ----- ----- <u>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u> 제78조에 ----- ----- 5 ~ 7(현행과 같음)</p>
<p>제9조(회의) ① ~ ②(생략) <u><신 설></u></p>	<p>제9조(회의)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가 제7조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중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과 반수 이상과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평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심의 의결)</p> <p>①(생략)</p> <p>②위원회가 <u>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u></p> <p>제22조(규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0조(심의 의결)</p> <p>①(현행과 같음)</p> <p>②----- <u>제7조제4호의 사항에 -----</u> ----- ----- ----- --</p> <p>제22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23조(일괄입찰·대안입찰 설계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는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p>
---	--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52
----------	------

발의년월일 : 2007. 4. 5.
발 의 자 : 도시건설위원장

□ 수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중복된 내용을 수정·삭제하고,
-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심의와 집행기본계획서의 심의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함.

□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기능중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수정함. (안 제7조제4호)
- 나.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심의와 집행기본계획서의 심의를 구분하는 것으로 수정함. (안 제7조제5호)
-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2조)
- 라.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준용 규정을 삭제함. (안 제23조)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호중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으로 하며, 동조제5호 내지 제7호를 동조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한 집행기본계획서 심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규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제2항을 삭제한다.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7조(위원회의 기능) 1~2(생략)</p> <p>3.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u></p> <p>4.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한 집행기본계획서 심의</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5~7(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1~2(원안과 같음)</p> <p>3.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u></p> <p>4.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u></p> <p>5.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한 집행기본계획서 심의</u></p> <p>6. (원안 제5호와 같음)</p> <p>7. (원안 제6호와 같음)</p> <p>8. (원안 제7호와 같음)</p>
제22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규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일괄입찰·대안입찰 설계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는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u><삭 제></u>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생략)</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안산시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것 중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자문요청 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